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4. 1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년 4월 6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18년 4월 1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춘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 안 제2조)
- 편의지원사항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규정(안 제3조~ 안 제4조)
  -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

받을 수 있음

- 지원범위, 지원기준,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(안 제5조~ 안 제6조)
  -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  -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 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함
-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 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, 방법,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 - ※ 서울시 타기관 조례 제정현황: 16개 기관(서울시 포함)
    - 서울시, 종로, 중구, 성동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, 마포, 강서, 구로, 동작, 관악, 강남, 송파, 강동
- 영등포구 장애인 공무원은 2018년 3월 현재 총 59명으로 중증 10명, 경증 33명이며, 장애인 고용률은 4.1%임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  - 안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·운영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,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며 지원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,
  -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

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 취소와 경비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9조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,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무능률 및 편의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편의지원사항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- 1)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다. 지원범위, 지원기준,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- 1)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- 2)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함

라.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3.8. ~ 3.19. / 11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공무원”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2.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**제4조(기본원칙)**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

원 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범위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지원 기준 및 절차)**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지원방법)**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,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3.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, 비영리단체

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
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9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